

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의안 번호	168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6. 8. 17

발 의 자 : 홍석환 의원 등 13인

□ 제안이유

-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로 조례명칭이 변경되면서 정당교섭단체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회의규칙의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의장은 의원의 의석배정, 의사일정변경 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하여 정함(안 제3조, 제17조)
-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 까지 의회의 연간 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함(안 제7조의2 신설)
- 의장은 직무중 의사운영, 의회기관 및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, 중요행사, 대외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(안 제9조의2)
- 5분 자유발언과 집행부에 대한 질문에 관한 사항 등은 의장이 각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(안 제31조의2)
- 시장 등의 출석요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,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(안 제66조)
- 의장은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 시간, 질문자수, 질문순서 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함(안 제66조의2)
-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및 긴급현안질문 신설(안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)
- 의원의 징계에 관한 심사를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에서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변경(제82조, 제85조, 제86조)

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제1항중 “의회운영위원회”를 “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”로 한다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 까지 의회의 연간 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①의장은 법4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중 의사운영, 의회의 기관 및 조직과 관련 되는 사항, 중요행사, 대외 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.(의회내부기관의 설치 및 위원위촉,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당별 배분 및 추천, 행정사무조사 요구 시 조사위원회의 확정, 결산검사위원의 선임,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석의원 배정 및 추천 등)

②의장이 제1항의 업무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협의안을 작성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협의를 요청하고,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교섭단체 대표의원회의(이하“대표회담이라 한다)에 출석하여 보고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.

③각 교섭단체나 그대표의원의 합의 또는 의견조정을 위한 대표회담은 합의 또는 의견조정을 필요로 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의로 제1당의 대표의원이 소집한다.

④대표회담은 협의결과 또는 합의내용은 제1당의 대표의원이 의장 또는 관련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

⑤대표회담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전체의원의 의사에 따른다

제13조중 “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”를 “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”로 한다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- ①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
- ②의장이 비공개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2항중 “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”를 “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”로 하고, “의장이”를 “의회운영위원회에서”로 한다

제17조중 “의장이 필요하다고”를 “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”로 한다

제31조의2제2항중 “의장에게”를 “소속 교섭단체 대표 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”로 하고, 같은조 제3항중 “의장이 정한다”를 “교섭 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”로 한다

제33조에 제3항, 제4항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- ③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30분까지 발언 할 수 있다
- ④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와 발언자를 정한다
- ⑤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자수와 발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50조중 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”를 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”로 한다

제6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,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

제66조의2제3항중 “다만,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은 10분을 연장할 수 있다”를 “다만,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연장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조 제5항중 “의장에게”를 “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”로 하여 “제4항”으로 하고, “제4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하고 “제5항” 및 “제6항”과 “제8항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⑤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

⑥의장은 제3항의 질문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,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자의 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자를 정한다.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의 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

⑧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그 질문 순서를 질문일 3일전 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질문일 2일전 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집행부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들을 수 있다

제6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①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대 집행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(이하 이조에서 “긴급 현안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.

④긴급현안 질문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⑤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. 다만, 보충 질문은 5분을 초과 할 수 없다.

제70조제1항, 제71제2항, 제3항 및 제72조제1항, 제2항과 제82조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85조제1항, 제86조제1항중 “징계자격특별 위원회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한다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제3조 (의석배정) ① 의회의원(이하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석은 의장이 <u>의회운영위원회</u>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 (신 설) (신 설)	제3조 (의석배정) ①----- <u>각 교섭단체 대표의원</u>과 ----- ----- ----- 제7조의 2 (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) 의장은 <u>각 교섭단체 대표의원</u>과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<u>의회의 연간운영의 기본일정</u>을 정하여야 한다. 제9조의 2 (의장의 직무협의) ①의장은 법4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중 의사운영, 의회의 기관 및 조직과 관련 되는 사항, 중요행사, 대외 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.(의회내부기관의 설치 및 위원위촉,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당별 배분 및 추천, 행정사무조사 요구 시 조사위원회의 확정, 결산검사위원의 선임,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석의원 배정 및 추천 등) ②의장이 제1항의 업무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협의안을 작성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협의를 요청하고,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교섭단체 대표의원회의(이하“대표회담이라 한다)에 출석하여 보고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. ③각 교섭단체나 그대표의원의 합의 또는 의견조정을 위한 대표회담은 합의 또는 의견조정을 필요로 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의로 제1당의 대표의원이 소집한다. ④대표회담은 협의결과 또는 합의내용은 제1당의 대표의원이 의장 또는 관련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⑤대표회담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전체의원의 의사에 따른다

현행	개정안
제13조 (개의) 본회의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<u>의장이</u> 그 개의시를 정한다. (신 설)	제13조 (개의) -----<u>의장이</u>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.
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 ①(생략)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<u>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</u>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<u>의장이</u> 이를 결정한다	제15조의 2 (회의의 공개) ①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<u>의장이 비공개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</u>
제17조 (의사일정의 변경)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<u>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u>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	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<u>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</u>과 협의하고 -----<u>의회운영위원회에서</u> -----.
제31조의 2 (5분 자유발언) ①(생략)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<u>의장에게</u> 신청하여야 한다. ③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<u>의장이</u> 정한다.	제17조 (의사일정의 변경) -----<u>의장이</u>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33조(발언시간의 제한) ① - ②(생략) (신 설) (신 설) (신 설)	제31조의 2 (5분 자유발언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<u>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</u> 경유한 후 <u>의장에게</u>-----. ③-----<u>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</u> 고려하여 <u>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</u>과 협의하여 <u>의장이</u> 정한다.
제33조(발언시간의 제한) ① - ②(생략) (신 설) (신 설) (신 설)	제33조(발언시간의 제한) ① - ②(현행과 같음) ③<u>교섭단체 대표의원</u>이 <u>교섭단체를 대표하여</u> 연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30분까지 발언 할 수 있다 ④<u>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</u>과 협의하여 동일의회제에 대하여 <u>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와 발언자</u>를 정한다 ⑤<u>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</u>의 발언자수와 발언자는 <u>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</u>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50조 (본회의중 위원회 개회)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 중에는 개회 할 수 없다.

제66조 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 - ③(생략)

④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,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6조의 2(집행부에 대한 질문) ① - ②(생략)

③시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할 수 있고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. 다만,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은 10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(생략)

⑤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
(신설)

(신설)

(신설)

(신설)

제50조 (본회의중 위원회 개회)-----
-----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-----.

제66조 (시장 등의 출석요구)① - ③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,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6조의 2(집행부에 대한 질문) ①-②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----.

다만,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-----
--소속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-----.

⑤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

⑥의장은 제3항의 질문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,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자의 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자를 정한다.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의 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

⑦(현행 4항과 같음)

⑧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그 질문 순서를 질문일 3일전 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질문일 2일전 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집행부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8조의 2 (교섭단체 대표연설)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들을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
(신설) 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 ②(생략) 제71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)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 ②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. 다만,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. ③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. ④(생략) 제72조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①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·발언 할 수 있다. ③(생략)	제68조의3 (긴급현안 질문) ①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집행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(이하 이조에서 “긴급 현안 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. ③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. ④긴급현안 질문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. ⑤긴급현안 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. 다만,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 할 수 없다. 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①----- -----윤리특별위원회----- -----. ②(현행과 같음) 제71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) ①----- -----윤리특별위원회----- ②윤리특별위원회 ----- -----. ③윤리특별위원회 ----- ----- ④(현행과 같음) 제72조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①윤리특별위원회----- ----- ----- ②-----윤리특별위원회----- -----. ③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82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(이하 "징계대상자"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에 회부한다. ②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에 회부한다. ③(생략)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에 회부한다. ⑤(생략)	제82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①----- ----- -----<u>윤리특별위원회</u>-----. ②----- ----- -----<u>윤리특별위원회</u>-----. ③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<u>윤리특별위원회</u>-----. ⑤(현행과 같음)
제85조(심문 및 변명) ①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(생략)	제85조(심문 및 변명) ①<u>윤리특별위원회</u>----- ----- ②(현행과 같음)
제86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 ①의장은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 ②(생략)	제86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 ①-----<u>윤리특별위원회</u>----- ----- ----. ②(현행과 같음)